

## 고교수업료무상화의 조선학교에로의 적용문제

2011년 9월 9일  
박삼석(조선대학교교수)

(菅直人수상은 지난 8월 29일에 2010년 11월부터 중단하고있던 조선학교수업료무상화를 위한 적용심사를 재개할것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지시하였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시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였으며 약 2달정도로 심사를 마친다고하고있다.

한편 일본의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 조치에 대하여 비판하여 그 심사수속을 중지하고 조선학교를 끝끝내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제기하고있다.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년반기간에 《일본의 사회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것으로 3번에 걸쳐 지연조치가 취해진 경위로 하여 적용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 긴장되고있다.

적용을 요구하는 재일조선인들과 일본시민들은 실지 적용될때까지 일본사회와 남,북의 동포들,국제사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계속 호소하고있다. 적용을 요구하는 조선학교측의 요구내용과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이하 글을 개재한다.이하 글은 8월 22일~28일에 호각칸헌법연구소의 홈페이지 <금주의 한마디> (일본어)에 개재된 글이다.)

### 학생들의 절실한 호소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중 31교가 2010년 4월부터 고교무상화에 해당하는 취학지원이 적용되고있다.고교단계에 있고 각종학교이면서 제외되고있는 학교는 조선고교(정확히는 조선고급학교,이하 같음)의 10교뿐이다.취학장려금은 학교에 지불되는것이 아니라 학생개인에게 지급되는것이다.

취학지원이 적용될 경우 한 학생당 연간 약 12만엔이 지급되게 된다.이 금액은 학비모두를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 수업료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이다.조선고급학교 경우는 연간 약 50만엔의 학비가 걸린다.조선고급학교학생수는 모두로 약 1800명에 달한다.

조선고교에 다니는 어느 학생은 《우리들에게 권리를 주시오.배우는 권리를.돌연히 나타난 차별.이 문제로 필사적으로 싸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고있다.이 말속에 3세,4세인 어린이들의 절실한 호소가 솔직히 언급되어있다.

지난해 2월에 이 문제가 부상했을때 조선고교의 학생들은 당시의 鳩山由紀夫수상에 직접 만나 호소하고싶다고했다.수상은 만나는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지는 만나지 않았다.

지난 1년반의 추이를 보면 수상이 지연조치를 직접 지시한 경위로 보아 수상의 결단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는것이 명백히 되어있다.

### 고교무상화에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것은 획기적인 일

일본의 교육행정에서 평상시에 외국인학교에로의 국고보조를 제도적으로 적용한것은 고교무상화법이 처음되는 일이다.

이것은 외국인학교를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일본의 교육행정을 크게 개선하고 외국인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조건을 보장해나가는것으로서 높이 평가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것으로하여 거꾸로 일본국내는 물론이여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교육차별》이라는 가장 엄격한 비판을 받고있다.

고교무상화의 취지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안심하여 배울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원래 고교무상화법에 밝혀져있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상

기준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육단계의 학교라는 것과 《각종학교》의 법적인가를 받고있는 학교라는 것이다. 조선학교는 이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 법률안이 제시된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그 대상이 되어있었으며 예산조치의 대상으로 되어있었으며 행정측도 국회심의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2월이후에 일부 일본의 정치인들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문제》 등의 외교관계 등을 리유로 들고나와 외국인학교중에서 조선학교만을 이 제도에서 적용제외로 하여 일본정부는 내외의 여론을 고려하여 문제를 뒤로 미루어왔던 것이다.

### 부득불 소송을 일으킬 의향을 밝힌 조선고급학교측

전국의 조선고교의 교장으로 구성되는 조선고급학교교장회 신길용회장(도쿄조선중고급학교교장)은 6월중순에 7월말까지 적용을 위한 심사수속이 재개안될 경우는 소송을 일으키지 아니할수 없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부득불 소송까지 일으켜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 조선학교관계자의 심정은 복잡하다. 심정이 복잡한 리유의 하나는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실제 조선고교에로의 취학지원적용의 방향에서 대응이 추진되었으며 지난해 11월말까지에 문부과학성이 적용을 위한 조선학교의 신청을 접수는 하였고 다만 심사수속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심정이 복잡했던 리유의 다른 하나는 지난해 8월말에 제출된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적용기준에서는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시설, 설비》, 《운영 및 정보제공》의 4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었으며 조선고교가 이러한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고있다는 것을 문부과학성도 사전의 조선학교방문과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결부하는 것은 당치않는 이른바 《립치문제》와 결부하여 감정론으로 취학지원금의 지급을 반대하는 일본시민들도 있으나 극 일부의 신문을 제외하여 일본의 신문사들의 사설이 한결같이 조선학교에로의 적용을 요구하고있는데서 알수 있듯이 일본사회의 량심있는 견식과 인권감각은 적용을 요구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 력사에 보는 3가지 대진재 및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재일조선인(조선반도출신자와 그 후손들)의 존재는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로 인한 일본에로의 이동이 배경에 있다.

그 재일조선인을 둘러싸고 막대한 피해를 미친 대진재가 3가지 있었다.

첫째는 1923년의 간토대진재이다. 자연적요인의 피해뿐만아니라 인적요인에 기인한 피해에 의하여 약 6000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된 력사가 있다. 둘째는 1995년의 항신, 아와지대진재이다. 재일조선인들도 129명이 희생되었다. 한편 이때 조선학교의 교정에서 벌어진 재일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호상 협력과 교류에 의하여 새로운 공존관계가 맺어졌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국제교류의 축적의 결과이기도 하였으며 일본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2011년의 동일본대진재이다. 다수의 재일조선인들의 희생자가 나와있으며 미야기현에 있는 조선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운동장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재일조선인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밀접한 생활실태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연피해도 함께 받는다. 인간으로서 서로에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 돕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의 조건을 보장해주려는데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 심정도 역시 같다.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공존과 공생을 키우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 있다.

##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단을

조선학교의 처우문제를 가지고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양식》과 《일본의 인권수준》이 엄격히 문제시되고있는 오늘이기에 일본정부에는 일본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정해진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에로의 심사수속을 즉시 재개할것이 강력히 요구되어있다.

헌법 26 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있다.그 기본내용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 실질적보장이다.그 조문은 《국민》들이 주체로 되어있으나 외국인도 그 향유 주체로 된다.국민의 문구만으로 권리주체를 정하는것이 불충분한것은 국민의 의무로되고있는 납세를 외국인도 똑같이 다하고있는데서도 알수 있다.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국제인권법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게 국한시키지 않고있으며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고있다.게다가 제일조선인은 외국인이기는 하나 영주자로서의 생활실태의 거점이 일본에 있으며 일본재류에 이른 역사적경위로부터 일본국민과 동등한 취급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헌법의 취지에 합치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는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의 실현이며 차별의 금지를 추구한다.이 원리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능력》이외의 그 어떤 《요인》과 《사정》에 의하여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둘러싼 고교무상화적용의 문제도 이 시점에서 접근하는것이 일본헌법의 요청이라고 볼수 있다.학생들의 《능력》과는 무관계한 《정치사정》,《어른들의 사정》,《정치적타산》,《랍치문제》, 《조선반도의 남북긴장관계》 등의 요인들은 그 《능력》과는 무관계한 《요인》,《사정》들이다.

사실 조선학교에로의 고교무상화의 적용제외문제처럼 차별이란 도대체 어떠한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것이다.

참으로 조선학교학생들에 대한 고교수업료무상화에로의 심사수속을 시급히 재개하여 취학지원을 적용하는 문제는 일본사회의 정의와 도리가 국제사회에서 날카롭게 문제시되어있는 초미의 문제라 할수 있다.

## 박삼석씨의 소개

1954 년 일본 기후현에서 출생.조선초급학교로부터 조선대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다.현재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교수.법학박사.조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일본의 국립대학에서도 비상근강사를 맡았으며 야마나시대학,가고시마대학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주된 저서

《해외코리아》(쥬오고오론신서),《외국인학교》(쥬오고오론신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조선학교 - 고교무상화문제로부터 보이는 점》 (니홍효론사)

(호각칸헌법연구소,헌법정보 <헌법관련서적,논문> HP 에 소개개재)